

## 2026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 준비물

- 수험표, 규정 신분증

### 시험 응시 관련

- 신분증의 사본 또는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수험표에 사진이 없거나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수험표 상의 성명과 신분증 상의 성명이 완전히 다른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에는 응시자와 시험관계자 외에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완료시간 전까지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이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지정된 시험장/시험실/좌석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지정되지 않은 시험장/시험실/좌석에서 응시할 경우, 성적이 무효 처리됩니다.

### <입실 및 퇴실시간 (인도시간 기준)>

구분	교시	영역	입실 완료 시간	시작	종료	시험 시간 (분)
TOPIK I	1교시	듣기 읽기	9:10	9:40	11:20	100
TOPIK II	1교시	듣기 쓰기	12:20	12:50	14:40	110
	2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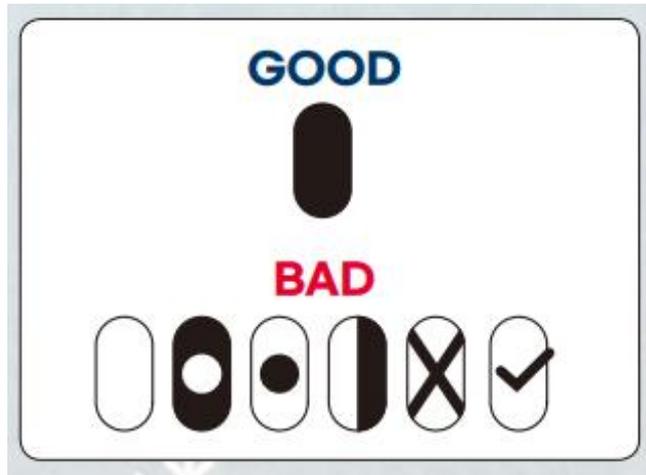
- 응시자는 문제지의 유형(홀수·짝수)과 답안지에 마킹한 문제지 유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이 있을 시 반드시 감독관에게 알립니다.)
- 시험 도중에는 퇴실할 수 없으나, 질병이나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조용히 퇴실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실한 때에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시험이 끝날 때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합니다.(중도 퇴실 시,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 시험 도중에 질병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등으로 퇴실 및 재입실할 때는 복도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중도퇴실자,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 TOPIK II의 경우, 1교시 결시자는 2교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환불도 받을 수 없습니다.
- TOPIK II 시험은 시험 중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단 휴식 시간에도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증명서는 출력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 당일까지 영문명·사진 등 접수 정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관리본부에 응시자 정보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험일 이후에는 시행기관의 귀책 사유 외에 정보 정정이 불가합니다.
- 성적증명서의 개인정보(영문성명 등)는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정보(응시자 수험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성적증명서의 불완전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답안지 작성 관련

- 답안지 작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불완전한 마킹, 올바르게 않은 답안지작성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시험 시간 관리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듣기 중에는 듣기답안만, 읽기/쓰기 중에는 읽기/쓰기답안만 작성 듣기 평가의 경우 별도 마킹 시간 없음.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낙서를 하거나 불필요한 표기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답안지 위 아래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문제지에만 답을 쓰고 답안지에 옮기지 않으면 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답안지 작성은 감독관이 배부한 양면 사인펜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채점결과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듣기/읽기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굵은 펜을 사용하고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불완전한 마킹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쓰기 답안은 양면 사인펜의 얇은 부분을 사용하여 반드시 정해진 답란 안에 작성해야 하며, 정해진 답란을 벗어나거나 답란을 바꿔서 쓰면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답안을 수정할 때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테이프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조용히 손을 들거나, 응시자가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면 됩니다.
- 답안지는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답안지는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등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 시험이 끝나도 시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문제지와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문제지나 답안지를 가지고 시험실 밖으로 나가면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문제 무단 배포 금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문제는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유출, 복제, 배포할 수 없으며, 이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 유출, 배포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반입 금지 물품

- 전자통신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응시자는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 중 반입 금지 물품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응시자 소지 중 적발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지 불허 물품

- 응시자는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의 개인물품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전자·통신기기는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전원을 끈 뒤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Cell phone	PDA	Table PC / E-book	Voice Recorder	Bluetooth Earphone	Electronic Cigarettes
					
Smart Watch	E-Dictionary	Pen Dictionary / Scanner	Laptop	iPAD	LCD/LED Digital watch

▶ 위 그림에 나열되지 않았더라도, 시험실 감독관이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기타 충전식 물품(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통신(블루투스 등) 기능이 있는 이어폰(한국어능력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지침,에 따라 승인받은 보청기는 제외)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모두 제출할 것을 고지한 이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험 시간, 쉬는 시간을 불문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한국어능력시험 기본 운영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조치되며, 1교시 시험 전 감독관에게 소지 불허 물품을 제출하지 않은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증명서는 출력할 수 없습니다.
- 성적증명서의 개인정보(영문성명 등)는 응시원서(또는 수험표)에 기재한 정보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성적증명서의 불완전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까지 영문성명·사진 등 접수 정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관리본부에 개인정보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성적 발표 후 성적증명서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시험일 이후에는 시행기관의 귀책 사유 외에 정보 정정이 불가합니다.
- 부정행위자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시험 관계자가 응시자 사진, 신분증 등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 처분 안내

- 부정행위 처분 통지(사전통지 포함)는 적발된 응시자의 전자우편주소(이메일)로 송달됩니다.
-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 처분 사전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이메일(topik@korea.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정행위 처분은 전자문서로 진행되며, 적발된 자의 전자우편주소(이메일)로 송달됩니다.

부정행위자 처리 안내		
구분	부정행위 내용	근거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행령
	▶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녹음, 촬영 등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기본운영규정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 주려고 시도하는 행위	
	▶ 시험 종료 후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 제출한 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단, 시험실 외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보관·관리 중인 경우 제외)	
	▶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필기구, 수정테이프 등 일체의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시행령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기본운영규정
	▶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문제지, 답안지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가 아닌 곳에 문제나 답안 등을 적는 행위	
	▶ 시험종료 후 문제지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문제, 답안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 촬영 및 음원 녹음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록·저장하는 행위 또는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성적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시행령

※ 자세한 내용은 TOPIK 홈페이지([www.topik.go.kr](http://www.topik.go.kr)) 참고